

[불임 5]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        |   |
|------------------------|-----------|--------|---|
| 수험번호                   |           | 지원분야   | <b>6급 신입직원</b><br>일반직(사무) ( )<br>일반직(기록물관리전문요원) ( ) |
| 청구인                    |           | 휴대폰 번호 |   |
| 주소지                    | (우편번호 : ) |        |   |
| 반환장소<br>(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우편번호 : ) |        |   |
| 반환청구<br>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四三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